준공기한 연기의뢰서

1. 계약내용

가. 계 약 건 명 : 2015년 U-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

나. 계 약 업 체 : ㈜원휴먼서비스

다. 계 약 금 액 : 금368,814,400원(금삼억육천팔백팔십일만사천사백원정)

라. 계약년월일 : 2015년 02월 25일

마. 착수년월일 : 2015년 03월 01일

바. 준 공 기 한 : 2015년 12월 31일

2. 위 공사의 준공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준공기한 연기내용

구 분	용역기간(준공기한)		비 고
	당 초	변 경	
준공기한	2015.03.01 ~ 2015.12.31	**2015.03.01 ~ 2016.02.29**	

나. 연기사유 귀책소재 : 성북구청

다. 지연배상금 부과여부 : 미부과

라. 연기사유

- 본 용역과 관련하여 「U-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」과 관련하여 2016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의 확정 및 교부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변경하고자 함.

2015년 12월 일

작성자 : 행정9급 성 장 민 (인)

확인자 :홍보전산과장 유 인 욱 (인)

성북구(분임)재무관 귀하